

디피씨 주식회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한 합병보고의 공고

디피씨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합병소멸법인”)와 2021년 11월 16일 각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당사가 합병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의 이사회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여 당사와 합병소멸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합병 당사회사

- 가. 합병회사: 디피씨 주식회사(존속회사)
- 나. 피합병회사: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소멸회사)

2. 합병 목적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본건 합병 등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주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합병 방법

디피씨 주식회사가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디피씨 주식회사는 존속하고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소멸한다. 디피씨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본건 합병을 진행한다.

4. 합병비율 및 신주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디피씨 주식회사는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건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디피씨 주식회사와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간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 합병의 주요 일정

구분	디피씨 주식회사	스탁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1.10.15.	2021.10.15.
합병 계약체결일	2021.10.19.	2021.10.19.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21.11. 1.	
소규모합병 공고	2021.11. 1.	
반대주주 의사표시 기간	2021.11. 1. ~ 2021.11.15.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2021.11.16.	2021.11.16.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2021.11.16. ~ 2021.12.16.	2021.11.16. ~ 2021.12.16.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2021.12.17.	
합병기일	2021.12.17.	2021.12.17.
합병(해산) 등기 예정일	2021.12.17.	2021.12.17.

2021년 12월 17일

합병존속회사

디피씨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45(목내동)
대표이사 도 용 환

합병소멸회사

스탁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2(대치동)
대표이사 곽 대 환